



## 중앙합동 안전점검을 다녀와서

강 석 규 우리회 부회장  
(주)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지난 12월에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지자체의 겨울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몇가지 기술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방재청에서 생각하는 안전은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의 안전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공학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도시기반 시설물과 건물의 모든 요소 및 행위, 가스 전기로 인한 재난, 그로인한 인명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이러한 재해/재난 예방활동이 이렇게 국가조직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체험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 주. 중앙합동 안전점검 수행조직

소방방재청(주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의 각 지자체

**둘째, 지자체는 이미 재난관리과라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과정을 보니, 지자체의 재난관리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과, 토목과 등 대민접촉부서에서 신고, 인허가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년간 5회, 즉 해빙기, 우기, 겨울철,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필요시 특별점검이 있으며, 이 결과를 재난관리과에서 취합하여 등급을 매기고 관리하며,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과를 실사 점검하고 지도하며, 이 번 안전점검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셋째, 안전점검 대상은 모든 시설물 및 이와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축대 등의 기반시설물, 건물과 이에 부속된 가스와 전기 수도 배관을 포함한 시설물, 가스저장시설과 그 부속물, 중단된 공사현장, 방치된 폐가 등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시설물과 그 행위였습니다.

넷째, 안전점검 수행방법이 문서 관리 위주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취합 관리하는 시설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비정상적인 상태의 시설물 혹은 현장이므로 담당자의 육안관찰과 관련서류 만을 갖고 상태등급을 매겨서 안전관리 하기에는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옥상광고탑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태등급이 B등급이지만, 정밀안전점검 결과 구조공학적인 내력이 부족하여 안전등급은 D등급이었으며, 중단된 공사현장이나 리모델링 공사현장과 같은 경우 상태만을 갖고 재난안전을 판단하기에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만을 갖고 국가 전체의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점만을 노출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참조예시 1] 중앙합동 안전점검 목적

- 1) 점검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점검
- 2) 점검항목 :
  - 특정관리대상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관련 서류  
※ 기본계획수립(재난관리부서), 시행계획수립(시설관리부서)
  - 2013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결과 및 점검결과
  - 건축 · 토목 · 산지전용 등 인 · 허가 대장 주요공사 관계서류(계약대장 등)
  - 현장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실태 확인

### [참조예시 2] 지자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 항목과 내용

- 1) 일제조사 추진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여부
  - 신축 건축 · 시설물, 대형공사장 등 지정 누락  
※ 공사 계약대장, 건축물 인 · 허가 대장 등과 대조
  - 다중이용건축물 지정 누락 및 오류 등  
※ 해당소방관서 소방관련 다중이용시설현황 등과 대조
  - 점검반 구성,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  
※ 자체예산 수립 등 지자체 여건 반영사항 확인
- 2) 2012년 개정지침 반영 여부
  - 자체지정대상 → 기타시설로 분류, 지정여부
  - 건축물 안전관리 이력카드(지침 159p), 대피유도 도면(지침 160p) 비치여부  
※ 건축물관리대장 · 설계도서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건축물인 경우
- 3) 안전등급 결정방법 전수적용 현황
  - 등급결정 프로그램 전수적용 여부
  - 등급결정 프로그램 개선 의견

#### 4)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현황

- 정기점검, 수시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여부
-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행정이행 여부
- 사용제한, 금지 등 안전조치 여부
- 해소실적 및 해소 장기·단기 계획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전산입력·관리 실태

이러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도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 ◆ 국가 재난안전 관리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첫째, 안전관리자문단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부서에 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실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각 실무부서에서 요청 활용하는 사례가 빈약하여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무부서는 안전점검 말고도 많은 업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체인원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는 것에 비해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안전점검 시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이 포함되도록 운영지침이 개정되어야 함.

둘째, 안전점검 시기의 조정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현재 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일제조사, 해빙기 특별점검, 우기대비 특별점검, 겨울철 대비 특별점검 등 년간 5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선 실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시기가 서로 겹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점검항목도 별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점검시기를 조정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초에 해빙기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수행하고, 이 결과를 취합하여 점검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우기와 태풍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수행하며, 하반기 중반에 겨울철 대비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되, 그 범위를 상반기 점검결과를 확인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 안전점검 시기를 해빙기+상반기 1회, 우기/태풍 특별 1회, 겨울철+하반기 1회로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함.

셋째, 안전관리점검단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은 관련부서의 인력이 수행하고 있으나 본연의 업무와 겹쳐 투입시간의 부족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점검하지 못하며,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육안관찰에 의한 상태평가만 수행하고 있어 구조공학적인 안전성 판별이나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시 운영되는 안전관리점검단이 필요하며, 여기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은퇴자들이 중심이 되어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면 비용

측면의 문제는 없을 것이며, 부가적으로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의 인원은 긴급 특별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하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조기술사와 같은 전문가들 중에 은퇴자들이 중심이 된 재능 기부단을 만들어 상시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 한 노인복지+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올 것임.

넷째, 리모델링시설물에 대한 재난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노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를 도시에 산재해 있는 재난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자주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모델링공사의 철거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책임구조기술자에 의한 철거단계 안전검토서 및 리모델링 안전확인서가 인허가 단계에 제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사에 의한 건축설계는 건물의 형태, 용도, 면적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실제 건물의 현황, 보유하고 있는 내력, 노후도가 미치는 영향, 변경을 위한 구조공학적인 안전성 여부는 시공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더욱 엄밀하게 말하면, 작업반장과 장비운영자에게 구조안전을 맡기고 있는 꼴이며, 이는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심화되어 요즘 리모델링 공사과정 중에 붕괴사고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과 별개로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규제가 아니며, 규모에 상관없이, 리모델링 건축행위는 엄격하게 안전점검이 수행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에 설치된 안전점검 관리단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리모델링 시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철거단계 안전검토서와 리모델링 안전확인서가 인허가단계에 제출되어야 함.